인제대학교 4단계 BK21 ‘디지털항노화융합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2020.12.01. 제정
2021.03.01.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BK21 디지털항노화융합연구단 (이하 ’사업단‘)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의 BK21 디지털항노화융합연구단 (이하 ’사업단‘)에 적용된다.

제 3 조 [사업단의 조직]
1. 사업단의 조직으로는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로 구성된다.

2.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책임 위원으로 교육과정 책임 위원, 연구 책임 위원, 국제협력 책임 위원, 입시 및 홍보 책임 위원을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가. 교육과정 책임 위원은 사업단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한다.

   나. 연구 책임 위원은 사업단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점검하고 산업체의 요구사항 및 국제적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사업단 연구능력 제고를 하며, 아울러, 정부, 지자체, 산업체 연구과제를 관리하며, 사업단의 연구 관련 업적을 관리한다.

   다. 국제협력 책임 위원은 국제협력 대상 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단의 국제 교류를 관장, 해외우수인력 초청 및 세미나 개최, 해외연수, 해외인턴,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라. 입시 및 홍보 책임 위원은 우수 참여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대내외적 입시 및 홍보 전략 기획 및 활동을 하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한다.

3. 사업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단장]

1. 사업단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을 둔다.

2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들을 관장한다.

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나. 사업의 총괄 수행

다.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라.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마. 사업단 사업계획 시행 및 예산집행

바. 사업성과 평가 및 행정 업무

사. 대외 활동 업무

아. 기타 BK21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

제 5 조 [운영위원회]

1. 조직 구성

가. 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나.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사업단장이 사업단 참여교수 중 8명 이내로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교육과정 책임 위원, 연구 책임 위원, 국제협력 책임 위원, 입시 및 홍보 책임 위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학기에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사업단장이 상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장의 활동에 협력한다.

4. 역할 및 기능

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업단 예산심의 및 결산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토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6 조 [자체평가위원회]

1. 조직 구성

가. 위원장

(1)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나. 위원장 의무사항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팀 2020년 12월 24일 제정) 제1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명시한다.

(1) 위원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원

(1) 위원회 위원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의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필요시 정식으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이외에 자체평가를 위하여 BK21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다.

(3)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2. 평가시기

가.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시 운영하되, 년 1회 이상 명시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나. 구체적인 자체평가 시기는 전년도 9월1일~당해 연도 8월31일(1년간) 실적에 한하여, 당해 연도 9월~10월 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체평가 형식 및 내용

가. 자체평가 형식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운영

(2) 사업단의 운영

(3) 사업단의 비전 및 사업목표

(4)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5) 교육과정

(6)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실적 등

(7) 교육 및 연구시설

(8)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등

나. 자체 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개선사항을 문서화해야한다.

4.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산학협력위원회]

1. 조직 구성

가. 위원장

(1)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나. 위원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은 사업단장, 산업체 겸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계 및 연구소의 외부 전문가 (박사급 혹은 CEO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2. 산학협력위원회는 년2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3. 역할 및 기능

가. 지역 산업체와 전략적 MOU 및 교류 프로토콜 구축

나. 체계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업체 애로 사항 수집 및 창의적 융합연구 아이디어 창출

다. 산업체 연계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라. 구성원의 의견반영을 통한 교육목표의 개선 체계 확립

마.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산업체 의견 수렴

제 8 조 [참여교수의 자격]

1.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인제대학교 대학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 협동과정 교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2. 총장이 임용한 인제대학교 대학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 협동과정 소속의 전일제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교수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3. 참여교수가 안식년과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국내에 부재하더라도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제 9 조 [참여교수의 변경]

1. 사업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 사업단의 사업 목표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참여교수의 변경 및 추가에 있어 운영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기존 참여교수들과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2.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3. 참여대학원생은 사업기간 동안 전일제 여부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일제 대학원생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원대학원생]

1.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 국고지원금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의미하며,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업성적,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BK 참여대학원생 수의 70% 이내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2.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 내외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산 학생 수를 고려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환산 학생 수 = A+(B×1.5)+(C×2)
   A :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 수, B : 박사수료 과정 참여대학원생 수, C : 박사과정 참여대학원생 수
   나. 매년 1학기에 지원되는 연구장학금의 총액은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1차년도의 경우 50%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 매 학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대학원생의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제 12 조 [신진연구인력]

1. 사업단에서는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제대학교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2. 참여교수의 사업시작년도부터 신진인력 선발 직전연도까지의 교수 실적 및 교수 기여도, 당해연도의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할당 금액 및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장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능력, 연구단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신진연구인력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종료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1. 사업단에서는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본교 “연구계약교원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제화 업무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점 등, 고급 실무인재 양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 14 조 [교육연구단 전담 행정직원] <개정 2021. 3. 1.>

1. (인건비 재원) 국고 또는 대응자금으로 한다.

2. (수당 지급) 행정직원이 소정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교육연구단(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재원은 국고 또는 대응자금으로 한다.

3. (인건비 책정기준)

가. 행정직원 신규 임용 시 연봉의 최소 기준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1호봉 연봉으로 하며, 임용자의 경력 사항 및 업무 조건 등을 추가로 고려한 최종 연봉은 교육연구단(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연봉 구성 : 기본급(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상여금 제외) * 12개월

나. 행정직원 재임용 시 연봉은 직전 연봉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4.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및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 또는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5. (상여금 지급) 행정직원에게 하계 휴가비 및 효도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 15 조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

1.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연구실적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이 사업단의 참여교수 가운데 사업단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2. 사업단 소속 교수에 대하여 매년 1월~2월경 성과급을 지급한다.
3. 성과급 지급기준은 참여교수의 연구(SCI급 논문(과학기술), SSCI/SCOPUS급/학진등재지 논문(인문예술)), 교육(참여대학원생 교육. 교육과정 참여 등), 산학협력(특허출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국제화(국제협력, 영어교육 등)의 우수성 그리고 봉사(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 업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한다. 연구, 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봉사 영역은 균등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국제화 경비]

국제화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한다.

1. 국제학회 참석 및 해외기관 단기연수

가. 지원기준: BK 21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기관으로의 단기연수 지원 시에 지원한다. 단. 국제학회 참여 시 지원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적합한 학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1) 4개국 이상 참여
2)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3)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의 경우 1/3 이상)

나. 지원액: 학회 등록비, 숙박비, 여비, 항공료 등

다. 지원 대상: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한다.

라. 제출서류
1) BK21 단기 해외연수경비 지원신청서
2) 학회 관련 자료 (국제학술대회 증빙 관련 자료,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3) 등록비 영수증 원본
4)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5) 항공권, 숙박료 등 체재비 영수증 사본
6) 여권 사본(입출국 기재면 표시)

마. 기타: 해외기관으로의 단기연수 지원은 교육부 훈령과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인제대학교 여비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2. MOU 체결 기관 교류 및 국제워크샵 참석

가. 지원기준: BK21 사업단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이 MOU 체결 기관과의 교류및 국제워크샵 참석 시 지원이 가능하다.

나. 지원액: 체재비, 항공료, 여비 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급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함)

다. 지원 대상: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자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한다.

라. 제출서류: 가 항에 준한다.

3. 장기해외연수 (연수기간 15일 초과)

해외기관으로의 장기 연수 지원은 교육부 훈령과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위탁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단, 부득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인제대학교 여비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 규모를 산출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4. 해외학자 초빙

사업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특강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 해외학자에 대하여 강사료와 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며, 강사료와

여비, 항공료 등은 인제대학교 여비규정 및 전문가 활용비 지원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기타 국제화 활동

국제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등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는 BK21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이 필요한 경우 연간 예산서 제출 전 계획을 세워 예산서에 반영하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 17 조 [사업단 운영비 집행]

사업단 운영비 집행은 사업단의 사업비 시행세칙 및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8 조 [관리직원의 채용]

사업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관리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채용 관련세칙은 인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 19 조 [준용지침]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한국연구재단 2020. 12. 24)과 인제대학교 및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시행세칙 등]

이 규정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 집행된 것으로 본다.